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영문명) Koramco Asset Management Inc  
(홈페이지) <http://www.koramcofund.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2층(삼성동, 골든타워)  
(전 화) 02-787-0101

대 표 이 사 : 박형석 (인)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 준법감시인  
(성 명) 강현정 (전 화) 02-2251-7339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홍장혁 (전 화) 02-2251-7447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2024다219162 약정금
2. 원고·신청인	청연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외1(피고, 피상고인)
3. 판결·결정내용	상고를 기각함
4. 판결·결정사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시함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4.05.30
7. 확인일자	2024.05.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펀드의 수익자인 원고가 원본 손실금에 대하여 청구한 사안으로 당사 승소로 소송 종결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